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5.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44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
-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정찬식)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됨 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수 있다.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23. ~ 2024. 3.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기획예산과(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가족정책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안건은「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임.
- 2018. 1. 1. 시행된「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 전의 규정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바 20만원 이하로 조례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납기) 중 재산세 세액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 2023년 기준 연간 6백만원의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여져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개정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예상: 6,000천원

('23년 재산세 주택분)

구 분	발송건수	우편비용	비고
10만원이하	28,778	12,374,540	절감예상액 : 13,865*430
20만원이하	42,643	18,336,490	= 5,961,950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1년에 2번 부과 하는 소액 납부자가 일시에 납부함으로서 납부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의 효 율성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져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법 령의 개정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 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	제8조(납기)
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	
과할 재산세 세액이 <u>10만원</u> 이	<u>20만원</u>
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 안'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이제철(02-3423-5602)